

검찰 포토라인, 인격 침해인가 알 권리인가

25년 전 제정된 언론자율준칙, 폐지보단 보완 필요

김창룡 /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포토라인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 취재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의자 망신 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양손에는 천으로 덮인 수갑을 찬 채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무죄를 떠나 포토라인에 선 것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여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당연히 여겼던 포토라인 앞 '잠시 멈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11일 검찰에 출석하며 대법원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후 검찰청 현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은 '패싱'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포토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 취재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의자 망신 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형벌로도 기능하고 있어 당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포토라인을 통해 '밀실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며 수사의 공식화·공개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무분별한 취재 경쟁의 질서를 잡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포토라인 기능 놓고 갑론을박

실제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경우 199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을 벌이던 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2cm가량 찢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이듬해인 1994년 한국방송카메라 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나서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06년, '변화하는 취재 환경 적응'과 '새로운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만들어졌다.

포토라인 시행 준칙은 이후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 없이 세월을 보내다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2014년 5월 배우 전양자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두 동행자도 포토라인에 섰는데, 언론이 이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초상권'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1심에선 초상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론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 포토라인은 임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 포토라인 앞에 선 것만으로는 전 씨의 동행인이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 씨의 동행인이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 동의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초상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그러나 1심 판결은 2017년 2심에서 언론사 승소로 뒤집힌다. 주요 법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포토라인은 취재·촬영이 예정된 공개적인 장소이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된 취재경계선으로 동행자의 각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 자발적으로 동행해 취재진이 포진한 포토라인에서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 포토라인에 들어오는 동행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극적 자기방어 행위를 해야 촬영 거부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 보도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은 촬영·보도 당시에는 이를 묵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토라인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여러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공적 의미를 더 확대했다는 점, 카메라 촬영과 영상 보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포토라인과 같이 카메라의 집중 촬영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명시적이고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초상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해외 사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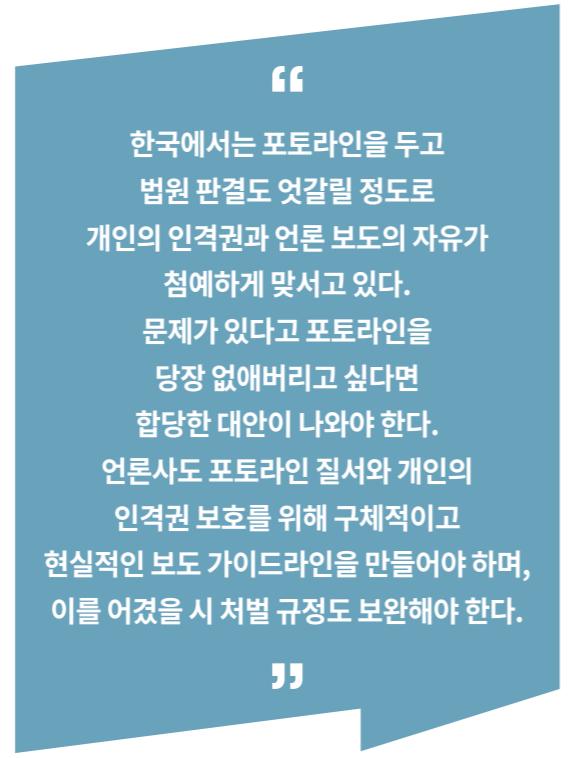
영국의 언론자율규제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는 1990년에 만들어졌지만 2014년 9월 문을 닫았다. 자율 규제의 한계로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결국 용도 폐기된 것이다. 이후

강력한 언론규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와 언론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언론계의 주장이 한동안 대립했다. 2011년 영국은 훈트 경을 중심으로 PCC를 대체할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언론규제기구 설립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신문, 잡지는 물론 인터넷 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파워블로거까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구인 IPSO(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가 2014년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IPSO는 영국의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저널리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희망을 밝히며 닻을 올렸다. 또한 언론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자들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따라 IPSO는 2016년 1,100개의 인쇄 매체와 1,500개 온라인 매체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다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기관으로 발전했다. IPSO는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언론 불만을 처리한다. 필요할 경우 언론사에 윤리강령 준수 보고서 작성률 요청할 수도 있다. PCC와 비교해 특히 다른 점은 ‘권한 강화’다. IPSO는 정정보도나 불리한 평결을 눈에 띄게 게재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윤리강령 위배가 구조적이고 심각할 경우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영국처럼 언론 자유를 신봉하는 국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 권한을 지닌 언론규제기구를 출범한 것은 영국 사회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한편 IPSO는 초상권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항 프라이버시 조항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적이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공적인 장소라도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조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
한국에서는 포토라인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릴 정도로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포토라인을 당장 없애버리고 싶다면 합당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언론사도 포토라인 질서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처벌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를 입은자의 사적 정보 노출 정도가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개인과 언론사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개인의 사적 정보가 ‘대중에 어떻게 얼마나 노출됐는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항 가혹행위(harassment) 조항에서는 ‘언론인들은 협박이나 가혹행위 혹은 집요한 취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인들은

사적 영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받거나 질문, 촬영, 취재 등을 거부당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이는 보도의 공적 가치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즉 언론이 공적 가치를 앞세워 개인에 대한 집요한 촬영과 질문, 전화하기 등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언론 자유 국가인 영국에서 조차 보도의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매체의 다변화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더욱 높아진 만큼 윤리강령의 강화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포토라인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릴 정도로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포토라인을 당장 없애버리고 싶다면 합당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언론사도 포토라인 질서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처벌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

현실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IPSO의 초상권 규정은 포토라인 가이드라인 개정에 유용한 참고가 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아홉 가지 제언을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첫째,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은 저널리스트의 자의 적이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널리스트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언론사 간부진에 보고, 혹은 상의하도록 해 개인의 불이익을 줄이고 언론사 차원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세분화·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행 의무가 없는 제3자는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도록 하든가, 서겠다고 고집할 경우 초상권 보호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넷째,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의무를 저버렸을 때 각 사의 징계에 맡기는 식은 곤란하다. 독립된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참고로 영국 타임스의 경우, 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징계위원회를 자사 간부나 기자들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영국 IPSO와 같이 외부의 검증된 양심적인 인사들과 관련 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국내 언론사의 윤리강령이나 제작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하기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계기로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선언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2년 혹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언론 관련 판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미디어의 전파력과 파괴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막강해진 만큼 촬영·보도 관련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여덟째, IPSO처럼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특히 촬영 등 영상의 경우 더욱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혹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용도 외에는 영상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아홉째, 포토라인 준수는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각종 유혹 자체를 전제로 하는 언론계의 질서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이에 연동한 풀(pool)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비회원사의 협조를 유도한다. ♣